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14.

파 주 시



□ 사업내역[건축허가(신축) 개요]

연번	대지위치	건축면적	층수 (동수)	주용도	안전점검비용
		연면적			
1	맥금동 432-44번지 [5,290㎡]	1,956.92㎡	지상3층 (1개동)	공장	금4,000,000원 (부가세 별도)
		4,908.25㎡			

□ 접수기간 : 2026. 8. 18.(화) ~ 2026. 8. 24.(월)

※ 제출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는 이메일(e-mail)로 제출하여야 함.

□ 접수장소: 파주시청 허가3과 건축허가3팀

(담당자: 이지현 주무관, ☎031-940-8783, e-mail: gipuda@korea.kr)

□ 수행기관 참가자격 및 지정 방법

- 1) 『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』에 따라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함.
- 2)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후 우선(예비)순위자 별로 『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, 평가방법』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정함.

□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[붙임 1, 2 참조]

□ 주요공정 계획 [붙임 5 참조]

□ 제출서류 [붙임 3, 4 참조]

- 1)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.(원본 제출)
- 2)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각 1부.(원본 제출)
- 3)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(e-mail 제출)

※ 원본제출:

[붙임 4]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, 자기평가서, 유사용역 수행실적, 점검진단 평가결과, 업무중첩도, 가격제안서, 서약서

※ 이메일 제출:

- 증빙자료 일체(원본대조필 날인 및 스캔 후 PDF파일 제출)
- 담당자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

※ 기한까지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

※ **가격제안서**는 봉투에 넣고 밀봉 후,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고, 봉투에 회사명을 명기하여 제출 바랍니다.

□ 붙임 자료

- 1) 파주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(안) 1부.
- 2)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.
- 3)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부.
- 4)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등 서식 1부.
- 5) 산출내역 및 공정계획서 1부(각 1부). 끝.